

평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(‘11년) 이후 상위법령 개정 사항 지연 반영 및 위임 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사례 발생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자부 주관으로 축조된 자치법규 기본안에 대한 강원도 시군담당자 합동작업 수행 결과를 토대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 법령 규정과 중복 규정된 내용 전부 정비

- ▶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만 반영
- ▶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표준안 전수 반영

나. 주요 내용

- ▶ 총 6장 15개 조항 및 부칙 2개 조항
- ▶ 제1장(총칙), 제2장(담배소비세), 제3장(주민세), 제4장(지방소득세), 제5장(재산세), 제6장(자동차세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 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 : 평창군공고 제2015-1034(2015.10.8~2015.10.28) 결과,

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(기획감사실-11409호, 2015.10.19)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감사실-11685호, 2015.10.26)

4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(주민생활지원과-61922호, 2015.10.26)

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: 별첨 1

평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군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평창군 군세 조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평창군 군세(이하 "군세"라 한다)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「지방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, 「지방세법 시행령」(이하 "령"이라 한다),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) 군세의 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「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」 제3조에 따른다.

제4조(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장 담배소비세

제5조(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)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
2.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
3.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제3장 주민세

제1절 균등분

제6조(세율)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개인의 세율
 - 가.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: 1만원
 - 나.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: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 적용
2. 법인의 세율 :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 적용

제2절 재산분

제7조(세율)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
제8조(신고의무)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

는 건축물의 소재지, 지번, 용도, 층수, 건축물의 연면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3절 종업원분

제9조(세율)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
제10조(신고의무)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
2.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
3.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
4.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

제4장 지방소득세

제11조(세율)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
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
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

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
제5장 재산세

제12조(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)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.

제13조(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)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.

제14조(납기)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
제15조(세율)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(자동차 1대당 연세액)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첨 1]

비용추계 미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 제1호

3. 미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재무과장 정성문
연락처	(033) 330-2270

[별첨 2]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세기본법

제5조(지방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(稅目), 과세대상, 과세표준, 세율, 그 밖에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